

2021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

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「2021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2월 15일

특허청장

1. 사업 개요

-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,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

2. 지원 대상
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(단, 직전연도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)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·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
 - *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(중소기업창업지원법)·신기술사업금융회사(여신전문금융업법)·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, 기업, 엔젤클럽 등을 포함

3. 지원 내용

□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

□ 지원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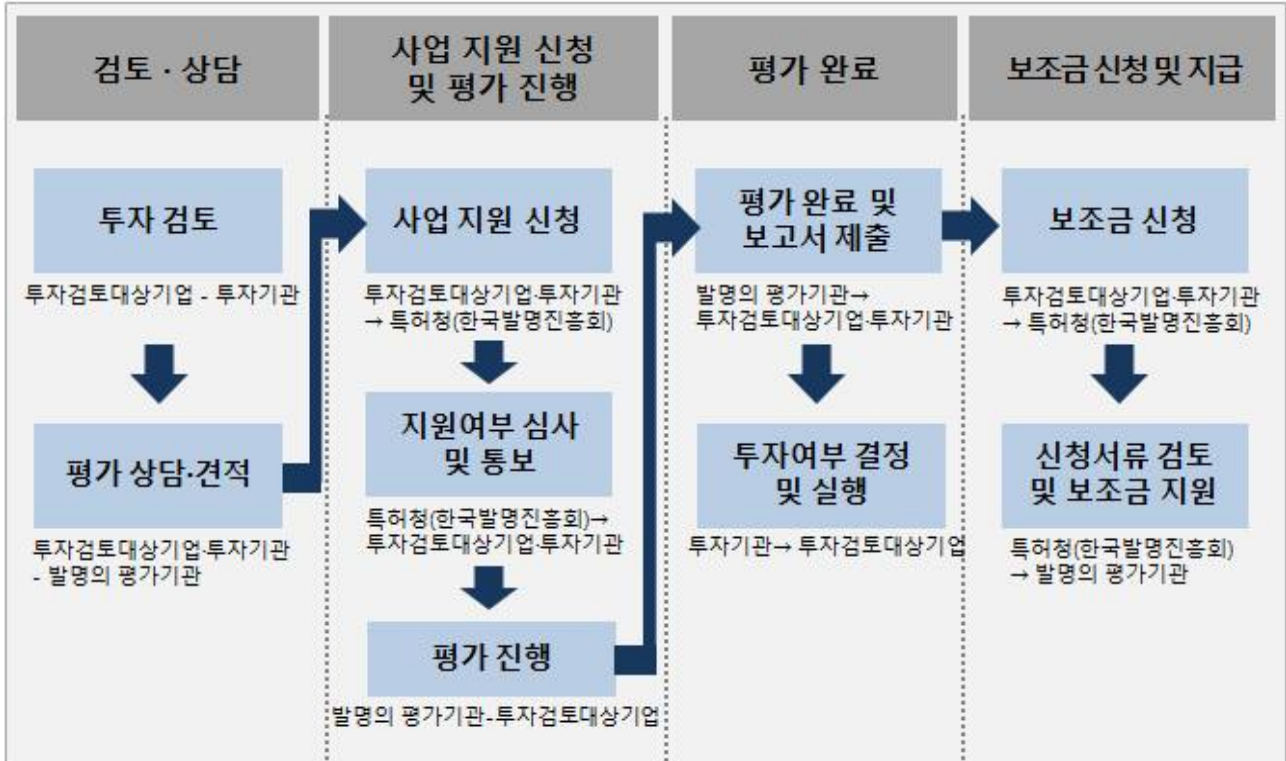
- (가치평가형)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1,500만원 이내에서 80% 지원
- (등급형)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750만원 이내에서 80% 지원

구 분	평가 비용	국고지원액	비 고
가치평가형	1,500만원 (VAT 별도)	평가비용의 80% 이내 (지원한도 1,200만원)	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
등급형	750만원 (VAT 별도)	평가비용의 80% 이내 (지원한도 600만원)	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

*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,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

** 특허기술평가별(가치평가형, 등급형) 특허평가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

4. 사업 진행절차



- ※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
- ※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

5.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

신청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(예산 소진시 까지)

신청방법

○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

*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(PDF 또는 JPG 파일)하여 ipv_too@kipa.org 로 제출

○ 제출서류

No	구분	제출서류명	수량	비고
1	사업 신청시	지원 신청서	1부	별지서식 제2호
2		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	1부	최근 1개월 이내 ("특허로"에서 발급)
3		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최근 2개월 이내
4		기업신용·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	1부	별지서식 제2-1호
5		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	1부	별지서식 제2-2호
6		특허기술평가 비용 견적서	1부	별지서식 제2-3호
-		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필수 아님)	1부	별지서식 제2-4호
-		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(중견기업은 필수)	각 1부	최근 2개월 이내
7	보조금 신청시	보조금 지원 신청서	1부	별지서식 제3호
8		평가결과 보고서 사본	1부	직인날인된 최종본
9		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	1부	-
10		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	1부	별지서식 제3-1호
11		보조금 입금통장 사본	1부	-
12		평가계약서 사본	1부	-

*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내 첨부 서식 활용

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해당 서류의 허위, 위·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,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
-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,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
-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(등록원부 등) 제출
-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,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,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6. 문의처

구분	평가기관	연락처	비고
지식재산 평가문의	(주)나이스디앤비	02-2122-1336	성능평가·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, 시장성, 권리성,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	(주)나이스평가정보	02-2124-6822	
	(주)웍스	02-3153-7928	
	(주)이크레더블	02-2101-9208	
	(주)케이티지	070-7805-1618	
	특허법인 다나	02-6957-3131	
	특허법인 다래	02-3475-7871	
	특허법인 도담	031-605-4134	
	한국기업데이터(주)	02-3215-2384	
	농업기술실용화재단	063-919-1345	
	기술보증기금	02-2155-3753	
	신용보증기금	02-2014-0166	
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02-3299-6023	
	한국발명진흥회	02-3459-2854	
	한국산업은행	02-787-6166	
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02-3415-8854	성능평가·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권리성, 기술성을 평가
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031-428-7575	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02-2164-0167		
사업관리	한국발명진흥회 (지식재산경영실)	02-3459-2953	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

※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**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** 평가기관이 발급한 **“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”**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

※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·발명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은 진행하지 않음

[별첨]

1. 지식재산가치평가 유형별 예시 각 1부.
2.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.
3.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. 끝.

【지식재산가치평가 내용(예시)】

특허청 지정 ‘발명의 평가기관’은 투자기관이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“맞춤형” 기술평가 수행 및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

* (예시1) 가치평가형 평가 수익접근법(현금흐름할인법) 등의 평가모형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 가능

[지식재산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]

항목	평가내용
기술성	① 기술개요
	② 기술환경분석
	③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
권리성	① 권리 안정성
	② 권리범위분석
	③ 사업 연관성
시장성	① 시장개요
	② 시장환경분석
	③ 시장경쟁분석
사업성	① 사업화 기반 역량
	② 제품 경쟁력
	③ 매출 추정 및 수익분석
가치평가	지식재산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(NPV)를 결정하고,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

* (예시2) 등급형 평가 투자기관 맞춤형 특허 평가(권리성/기술성 중심)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등급화 하여 평가 가능

[지식재산 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]

항목	평가내용
특허 권리성	① 제품적용여부
	② 구성의 필수성
	③ 선행기술존재여부
	④ 실시예의 다양성
	⑤ 특허의 활용 가능기간
	⑥ 경쟁사의 응용기술 선점여부
	⑦ 발명의 효과와 독립항의 효과의 동일성
	⑧ 해외권리 확보여부
특허 기술성	① 혁신성
	② 상용화 가능성
	③ 호환성
등급평가	각각의 항목에 등급을 책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식재산의 최종 등급산정

[별지서식 제2호]

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			
투자검토 대상기업	주 소	(우)_____	
	업 체 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	법인등록번호
투자검토 대상기업 담당자	성명/직책		소속부서
	전화번호		팩스번호
	휴 대 폰		이 메 일
권리(등록)번호		특허 제 10-_____ 호 외 건	
발명(고안)의명칭			
투자기관	주 소	(우)_____	
	업 체 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	법인등록번호
투자기관 담당자	성명/직책		소속부서
	전화번호		팩스번호
	휴 대 폰		이 메 일
평가용도		투자용	비용 지원율 80%
평가비용		원 (VAT별도)	평가소요기간 _____ 주
평가기관	지점명		
	담당자		
	전화번호		
자기부담금 납부주체	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검토대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
<p>《 첨부서류 》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1. 특허등록원부 1부 (※열람용 제출불가) 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)</p> <p>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)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3.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2-1호)</p> <p>4.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2-2호)</p> <p>5.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(별지서식 제2-3호)</p> <p>6.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 (권리자 다수인 경우) (별지서식 제2-4호)</p> </div> </div>			
<p>《 주의사항 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 중인 기술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-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, 신청이 취소될수 있음. -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,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. 			
<p>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일 : 20</p> <p>평가대상기업 : _____ 투자기관 : _____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인) _____ (인) _____</p> <p>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</p>			

개인정보 및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한국발명진흥회(이하 “본회”)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-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	
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(이하 "관리시스템")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·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,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
수집·이용 기관	• 본회 및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제휴기관(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)
수집·이용할 항목	• 담당자 성명, 휴대전화번호·이메일·팩스번호 등 연락처
보유 및 이용 기간	•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

1-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	
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·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·조회 및 활용,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제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
제공할 항목	•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·이메일 등 연락처
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

- ※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- ※ **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**
 -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동의확인 : { 담 당 자 명 } (인)

2-1.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	
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(이하 "관리시스템")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(신용)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, 지원효과 분석,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,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
수집·이용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회 및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제휴기관(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)
수집·이용할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식별정보 : 기업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 등 기업신용정보 : 보증·IP담보대출·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·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, 신용등급 변동이력 기업과세정보 : 지원기업에 대한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지식재산평가정보 : 평가기준일, 가치(등급)평가 결과, 평가기관, 평가일, 주요 추천변수(경제적수명, 할인율, 로열티율, 매출액추정 등) 별 투입정보 등
보유 및 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기간 :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(제공된 날) 이후 10년간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

2-2. 기업(신용)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	
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, 지원효과 분석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, 지원효과 분석, 지식재산평가·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·조회 및 활용,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국제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제공·조회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: NICE평가정보(주), 한국기업데이터(주) 등 (해당시)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P보증연계 :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- IP담보대출연계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광주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
제공·조회할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신용정보 : IP보증·IP담보대출·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·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, 신용등급변동이력 기업 과세·행정·인증정보 : 지원기업에 대한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,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 <p>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식별정보 : 기업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특허등록번호 등
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

※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※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

-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동의확인 : {신청기업명} (인)

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

본 계획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평가대상기업 : (인)
투자기관 : (인)

평가용도	※ 평가용도(목적)를 구체적으로 기재 ※ 평가대상기업이 작성
평가항목	※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, 사업성, 가치평가 등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예정 내용을 기재 ※ 평가대상기업이 작성
평가 추진일정	※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※ 평가대상기업이 작성

<p>평가의 필요성 (투자기관)</p>	<p>※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※ 투자기관이 작성</p>
<p>투자 예정금액</p>	<p>※ 투자예정금액을 기재 ※ 투자기관이 작성</p>
<p>투자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</p>	<p>※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※ 투자기관이 작성</p>

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

A(위임자)는(은)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(수임자)에게 위임하며,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○ 위 임 자(A-1) : (인감)

- 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○ 위 임 자(A-2) : (인감)

- 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○ 위 임 자(A-3) : (인감)

- 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=====

○ 수 임 자(B) : (인감)

- 주민(법인)등록번호 :

<해당 권리>

권리번호	발명(고안)의 명칭

20 . . .

- *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에만 제출
- *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
- * A,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
- * 별지서식 제2-1호 기업신용·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

평가비용 보조금 양도 동의서

□ 평가비용 지원대상 현황

발명(고안)의 명칭	
권리등록번호	(특허) 등록 제 _____ 호 외 _____ 건
평가신청자	
평가비용	일금 _____ 원 (부가가치세 별도)
평가기관명	

□ 평가비용지원 현황

평가비용 보조금 지원액 (비율)	_____ 원 (평가비용의 %)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□ 양도 동의사항

상기 건과 관련하여 평가신청인이 지원받을 평가비용 보조금의 수령권한을 아래와 같이 양수인(평가기관)에게 양도함

20 년 월 일

양 도 인	양 수 인
※ 양도내용 : 평가비용 보조금 _____ 원 수령에 관한 권한	
(신청자)	(평가기관)
(인)	(인)